

이 유

1. 당사자 주장

가. 신청인의 주장

- 본인은 2013년 8월8일부터 현거주지 옥탑에 거주하며, 야간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음
-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못자거나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금전 수입에 큰 피해가 있음

나. 피신청인의 주장

- 철거 및 터파기 공사는 2일간 진행하였으며, 작업시간은 주택가인 점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 마무리하였으며, 작업간 분진 발생 억제를 위하여 수시로 살수 작업을 하였음
- 터파기 시 발생하는 소음은 굴삭기 소음이었으며, 이 소음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약 90m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신청인 자택에서 들리는 소음은 아주 미약하다고 보여 짐
- 터파기 이후 구조물 공사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면 목수들의 망치소리 또는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하는 펌프카 장비소리이며, 이 소음 역시 신청인 주택과 약 90m 정도의 거리여서 아주 미약하다고 봄
- 신청인 뿐만 아니라 현장에 인접한 주택을 감안하여 분진막을 설치 하였으며 작업시간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정도로 시간을 조정하였음
- 구조물 및 외벽 공사는 8월말 마무리 되어있는 상태이며, 추후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소음은 없으리라 봄
- 지금까지 공사장 주위의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

다하였지만, 남은 공사기간에도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
나. 신청인 주거 건물 현황

- 위 치 : 00동 190-141
- 연 면 적 : 148.79 m^2
- 규 모 : 지하1층, 지상2층(4가구)
- 용도지역 : 일반주거지역
- 구 조 : 연와조
- 사용승인 : 1993.12.31.

다. 피신청인 공사현황

- 공 사 명 :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
- 위 치 : 00구 00동 190-94
- 연 면 적 : 231.84 m^2
- 규 모 : 지상5층
- 공사기간 : 2018.5.3.~2018.11.30.
- 시 공 사 : 건축주 직접 시공

3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

가. 소음 피해 평가

- 현지조사와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 신축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였음
- 건설장비와 공구류의 소음 및 진동레벨은 '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「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」, 2016. 12'의 내용을 참고하였음

4. 판 단

- 신청인 거주지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61dB(A)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공사장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65dB(A) 이하이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
5. 결 론

-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, 관련서류, 전문가 의견,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